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. 5. 20 선고 2020가단576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2. 8. 25 선고 2021나58881 판결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. 5. 20 선고 2020가단5765 판결

전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종결 2021. 4. 15.

판결선고 2021. 5. 20.

주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014. 1. 16. 체결한 상속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.

이 유

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.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,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데(민법 제406조 제2항),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인 상속협의분할 약정일이 2014. 1. 16.이고, 이 사건 소는 2020. 3. 12. 제기되어 법률행위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.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,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빈태욱

별지